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낮춘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000	624,600

○ 주야간 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3시간이상 6시간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이상 8시간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이상 13시간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7,69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바. 신원인수 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
-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받을 권리

(2) 의무

- 가) 이용자에게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또는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 잃음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

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주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 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